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검찰 PROSECUTION SERVICE	**대구지방검찰청** 전문공보관 인권감독관 이영재 전화 053-740-4352 / 팩스 0502-193-5504	**보 도 자 료** **2020. 9. 1.(화)**
제 목	**故 최숙현 선수 사건 관련 수사결과**	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등(제11조 제1항)
☑ 공판에서 현출되기 전이라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(제11조 제2항 제3호)
- 제7조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
- **대구지방검찰청 故 최숙현 선수 사건 특별수사팀(팀장 부장검사 양선순)은 故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등 관련 사건을 수사하여, 경주시 트라이애슬론팀 감독 등 관련자 3명을 구속 기소, 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, 수억 원의 지방보조금을 편취한 경주시체육회 前 고위임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**

Ⅰ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1 피고인

[선수들에 대한 가혹행위 등 관련]

- 김규봉 (42세, 경주시 트라이애슬론팀 감독)
- 안주현 (45세, 경주시 트라이애슬론팀 직원, 일명 '팀닥터')
- 장윤정 (31세, 경주시 트라이애슬론팀 선수)
- 김도환 (25세, 경주시 트라이애슬론팀 선수)

[지방보조금 사기 등 관련]

- A○○ (57세, 前 경주시 체육회 사무국장)
- B○○ (62세, 前 경주시 공무원)
- C○○ (42세, 경주시 소속 체육팀 관계자)
- D○○ (41세, 경주시 소속 체육팀 관계자)
- E○○ (59세, 경주시 소속 체육팀 관계자)
- F○○ (43세, 경주시 소속 체육팀 관계자)

2 공소사실 요지

[선수들에 대한 가혹행위 등 관련]

- **피고인 김규봉**

- 2015. 8.경 대걸레 자루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소속 피해 선수의 엉덩이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는 등 2014. 9.~2017. 5.경 총 18회에 걸쳐 상습으로 선수들을 때려 상해를 가함 **[상습특수상해] 등**
- 2015. 3.~2016. 8.경 총 5회에 걸쳐 피해 선수들로 하여금 억지로 1kg 가량 과자, 빵을 먹게 함 **[강요] 등**
- 2011. 2.~2020. 2.경 경주시체육회에서 항공료를 지급하였음에도 16명의 피해 선수들로부터 전지훈련 항공료 명목으로 합계 6,300여만 원을 편취 **[사기]**

- **피고인 안주현**

- 2017.~2019. 8.경 피해 선수들의 뺨을 1시간 동안 때리거나 발로 배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 선수 4명을 때림 **[폭행]**
- 2013. 7.~2019. 12.경 6명의 여성 선수들을 수영자세 지도나 마사지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가슴을 만짐 **[강제추행]**

- 2013. 2.~2019. 12.경 의사가 아님에도 19명의 피해 선수들을 상대로 물리치료 등 의료행위를 하면서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2억 700만원을 편취 **[보건범죄단속법위반(부정의료업자), 사기]**

● **피고인 장윤정**

- 2015. 8.~2019. 7.경 소속 선수로 하여금 위험한 물건인 철제 봉으로 피해 선수를 폭행하도록 교사하거나 직접 폭행 **[상습특수상해교사] 등**
- 2015. 3.~2016. 5.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 선수들로 하여금 억지로 과자를 먹게 하거나 머리를 바닥에 대고 엎드리게 하는 속칭 '원산폭격'을 하도록 함 **[강요] 등**

● **피고인 김도환**

- 2016. 2.경 훈련 중 아동인 피해 선수의 머리를 손으로 때림 **[아동복지법위반(아동학대)]**
- 2017. 6.경 훈련중 피해 선수가 엄살을 부린다는 이유로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림 **[폭행]**

[지방보조금 사기 등 관련]

● **피고인들의 공동범행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 등]**

- 경주시 체육회 임원들은 체육팀 감독들과 공모하여, 실제 참가하지 않은 훈련을 참가한 것처럼 실제 지출내역과 다른 허위 훈련계획서를 작성한 후 경주시 체육회에 제출하여 2016. 6.~2020. 1.경 피고인 A는 약 8억 원, 피고인 B는 약 2억 3천만 원, 피고인 C는 약 3억 5천만 원, 피고인 D는 약 2억 5천만 원, 피고인 E는 약 5천만 원, 피고인 F는 약 1억 2천만 원 상당의 지방보조금을 편취

※ 경주시체육회는 경주시청 소속 직장운동경기부(5개팀)의 운영·관리업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음(지방보조금 年예산 약 30억원)

- **피고인 A,B의 지방재정법 위반**

- 피고인 A,B는 공모하여 2017. 1.경 위와 같은 허위의 훈련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거짓의 지방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작성, 경주시에 제출

- 피고인 A는 계속하여 2017. 7.~2019. 1.경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짓의 지방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작성, 경주시에 제출

- **피고인 F의 공문서위조, 위조공문서행사**

- 2019. 8.경 경주시로부터 선수단 출입국 내역 제출요청을 받자, 위와 같은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공문서인 출입국사실증명서 5장을 위조, 경주시에 제출

Ⅱ 수사 경과

- 2020. 3. 5. 故 최숙현, 김규봉 감독 등 고소
- 2020. 6. 26. 故 최숙현 사망
- 2020. 7. 6. 대구지검 특별수사팀 편성
- 2020. 7. 20. 경주시 체육회 압수수색영장 집행

  ※ 지방보조금 편취 등 관련범행 인지, 수사 개시

- 2020. 8. 4. 피의자 안주현 구속 기소
- 2020. 8. 14. 피의자 김규봉 구속 기소
- 2020. 8. 26. 피의자 장윤정 구속 기소, 피의자 김도환 불구속 기소
- 2020. 8. 25. 지방보조금 사기 등 관련, 피의자 A, B, F 각 구속영장 청구

  ※ 법원, 주거일정,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 낮다고 보아 각 기각(8. 27.)

- 2020. 9. 1. 피고인 A, B, C, D, E, F 각 불구속 기소

Ⅲ 참고사항

- 대구지검 특별수사팀은 경북도경과 '수사협의체'를 구성한 후 긴밀히 공조하며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여, 경주시 트라이애슬론팀 가혹행위 관련 범행 전모를 확인, 주모자 전원을 구속기소함
-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, 경주시 체육회의 보조금 관련 비리를 추가로 확인하여 관련자 전원을 기소함
- 대구지검은 추가 고소·고발 사건 등에 대하여도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며,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도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을 담당하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